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된 경우,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뇌출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4두40400 판결)

1. 사안 및 쟁점

망인은 2007년부터 2012. 2.경까지 (F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2012. 9.경 F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 4. 16. 새벽 야간근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고려하여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원심] 원심은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요인과 교대근무로 인한 일주기 리듬 이상의 개연성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 점, 업무환경의 소음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점, 업무시간이 고시상 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경우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수행한 업무를 모두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 부족과 생체리듬의 혼란을 초래하여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야간근무와 뇌혈관 질환의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로 뇌혈관 관련 기초질환이 없었으나,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검진상 정상 범위에 있던 혈압이 고혈압 1단계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혈압 상승이 장기간의 교대근무와 관련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망인의 교대근무가 정해진 근무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불규칙하였고, 지하 3층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분진·용접 흄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으며, 업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상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처럼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대상판결은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주·야간 교대근무, 유해한 작업환경, 업무의 육체적 강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안에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장기간 교대근무의 누적된 영향을 평가하고, 뇌혈관 질병의 주요 발병 원인인 고혈압 역시 장기간의 교대근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총량뿐만 아니라 교대 일정의 규칙성, 야간근무자의 건강검진 결과 및 그 변화 추이, 작업환경 등 업무상 부담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srlee@shinkim.com

조찬영
변호사

02-316-4109
cyocho@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